



202.7 호

행정 명령

법률의 일시 중지 조치 및 수정 유지 재난 비상 상황에 관한 사항

2020년 3월 7일에 본인이 뉴욕주 전 지역에 주 재난 비상 상황을 선포하는 제202호 행정명령(Executive Order)을 발령함에 따라,

뉴욕주에서 COVID-19의 여행 관련 및 지역 사회 감염 사례가 발견되었고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,

COVID-19 비상 재난에 가장 시기적절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추진하기 위해 뉴욕주가 신속하게 모든 물품, 서비스, 전문 인력, 자원봉사 인력을 소집하여 조직하고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,

따라서 오늘, 저 Andrew M. Cuomo 주지사는 주 비상시 법률, 조례의 특정 조항, 명령, 규칙 또는 어느 기관의 규정 또는 그 일부의 준수가 비상사태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방해, 저해 또는 지연시킬 경우, 혹은 이러한 비상사태 대응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, 그러한 조항을 일시 정지 또는 수정시키기 위해 행정부법(Executive Law) 제2-B조 제29-a항에 의해 본인에게 부여된 권한으로, 다음 법률을 본 행정명령일부터 2020년 4월 18일 토요일까지 일시 정지 또는 개정합니다.

- 행정명령 202.6에 의한 제73조 및 제74항의 조항을 포함하여 공무원법(Public Officer's Law)에 대한 중지는 그러한 중지 및 수정이 명목상 또는 무급역을 위해 고용된 사람이나 자원봉사자 자격에 대해서만 유효하게 요구하도록 수정되었습니다.

또한, 행정부법 2-B조의 제29-a항이 본인에게 부여한 권한에 의거, 행정명령 일자로부터 2020년 4월 18일 토요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지시를 발행합니다.

- 뉴욕주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공증 행위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오디오-비디오 기술을 활용하여 수행할 권한이 있습니다.
 - 공증인에게 개인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경우 공증인의 서비스를 찾는 사람은 단순히 전후에 전송하는 것이 아니라 화상 회의 중에 공증인에게 사진이 부착된 유효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.
 - 화상 회의는 사람과 공증인 간의 직접적인 상호 작용을 고려해야 합니다(예: 서명자의 사전 녹화된 비디오 불가).
 - 그 사람은 자신이 뉴욕주에 물리적으로 위치하고 있음을 확실하게 표현해야 합니다.
 - 팩스 또는 전자로 전송하는 사람은 서명한 동일한 날짜에 공증인에게 서명한 문서의 또렷한 사본을 보내야 합니다.
 - 공증인은 전송된 문서의 사본을 공증하여 그 사람에게 다시 전송할 수 있습니다.
 - 공증인은 집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자 공증 사본과 함께 서명된 원본 문서를 받은 경우 집행 당일에 서명된 원본 문서의 공증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.
- 2020년 3월 21일 오후 8시에 발효되며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모든 이발소, 미용실, 문신 또는 피어싱 및 관련 퍼스널 케어 서비스는 대중에게 폐쇄됩니다. 여기에는 네일 미용사, 미용사 및 에스테틱 관리자, 전기 분해 요법 제공, 레이저 제모 서비스도 포함되며, 이러한

서비스는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.

- 대면 작업 환경 제한을 요구하는 행정명령 202.6의 조항은 다음과 같이 수정됩니다. 2020년 3월 21일 오후 8시부터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모든 사업체, 및 비영리 단체는 가능한 한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텔레커뮤팅 또는 재택근무 절차를 활용합니다. 각 고용주는 모든 작업 공간에서 대면 인력을 줄여 3월 21일 오후 8시까지 75% 줄여야 합니다. 모든 필수적인 서비스 또는 기능을 제공하는 필수적인 사업체 또는 단체에는 대면 제한 사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

2020년 3월 18일 올버니시에서 본인이 서명하고

주 정부 관인을 날인하여 선포함.



A handwritten signature in black ink, appearing to read "Andrew Cuomo".

주지사

A handwritten signature in black ink, appearing to read "Ms. C".

주지사 비서